

의안번호	제 48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결사항

거창군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48 호
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
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되고,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(2007. 10. 4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,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3항 → 제134조제3항(안 제1조)

「동법시행령」 제46조·제47조 →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(안 제1조)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→ 제64조 (안 제3조)

3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47조제3항 → 제84조제3항 (안 제9조)

나. 정확하고 자연스런 문장의 구성

1) oo조의 규정에 의한 → oo조에 따른

2) oo조의 규정에 의한다 → oo조에 따른다

3) oo조의 규정에 의하여 → oo조에 따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, 제134조

2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2조·제83조·제8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25조제3항”을 “제134조제3항”으로, “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”를 “제64조에 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”을 “별지 서식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조에 따라”로, “제3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5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1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0조에 따른”으로, “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

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125조제3항,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</u>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u>제13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</u>-----</p>
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<u>제2조의 규정에 의한</u> 위원은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선임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,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<u>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</u></p> <p>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<u>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</u> 위촉장을 교부한다.</p>	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<u>제2조에 따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<u>제64조에 따른다</u></p> <p>④ -----<u>별지 서식에 따른</u>-----</p>
<p>제7조(결산 감사의 내용과 범위) ① (생략)</p> <p>② 「지방공기업법」 <u>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거창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감사는 「지방공기업법」 <u>제35조의 규정에 의한</u>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같음한다.</p>	<p>제7조(결산 감사의 내용과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제2조에 따라</u></p> <p>----- <u>제35조에 따른</u> -----</p>
<p>제9조(감사의견서의 제출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<u>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</u> 감사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감사의견서의 제출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<u>제84조제3항에</u> <u>따른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 <u>제4조의 규정에 의한</u> 위촉 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. <u>다만,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 <u>제4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-- <u>삭제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 <u>제10조의 규정에 의한</u> 일비의 지급은 <u>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</u>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에 공휴일과 <u>제12조의 규정에 의한</u>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.</p>	<p>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 <u>제10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제4조제2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<u>제12조에 따른</u> ----- -----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 (의결정족수)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34조 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82조 (결산 승인)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제83조 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 (결산 검사 사항)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세입·세출의 결산
2. 계속비·명시이월비(明示移越費)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
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
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
5. 금고의 결산

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